지회 ·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
4. 2
9. 30
1962.
                  1969.
         3. 10
1978.
1982.
         4.
             6
         5.10
1984.
         1. 28
1992.
         3. 10
2. 10
1992.
1999.
1999. 10. 18
2002.
         1. 25
2003.
         4. 10
       10. 23
2003.
         3.30
2006.
              2
2007.
         4.
2010.
         1. 15
2011.
        1. 18
2011. 12.
              1
2016. 12.
             26
2017.
         2. 23
         8. 24
2017.
         8. 23
2018.
2018. 11.
         4. 18
1. 22
2019.
2020.
         \frac{1}{4}. \frac{1}{16}
2020.
2020. 8. 27
2020. 11. 25
         \frac{1}{4}. \frac{1}{13}
2021.
         8.11
2021.
2021. 11.
             9
         1. 20
2022.
2022.
2022.
         4. 26
         8.\,\overline{17}
2022. 11.
              9
         1. 18
4. 12
2023.
\frac{2023}{2023}.
2023. 10. 26
        1. 18
2024.
```

사단법인 대 한 무용 협 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에 규정된 본회의 지회·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지역 및 소재지) ① 본회의 지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 두며 지부는 시·군 및 해외에 둔다.

단, 해외지부는 해당 국가의 주(州) 또는 광역자치도(국내 개념과 유사한 범위) 단위 지역별로 설립하되, 설립되지 않은 행정구역 단위 지역이 연합하여 1개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2023.10.26. 개정)

- ② 도지회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지회 사정에 따라 소재지를 조정할 수 있다. (2022.8.17, 개정)
- ③ 서울특별시 지회는 본회가 겸하여 관장하며, 지회장은 본회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3조(설립권자) 본회 지회·지부의 설립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지부의 인준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구성

제4조(지회·지부의 구성) ① 본회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의 모든 회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용 전공자
 - 단, 무용 전공자란 국내·외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졸업자나 대학(교) 무용(학)과 또는 무용관 련학과 재학생 이상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자와 국·공립무용단 단원과 국가 및 지방무형유산 무용분야 이수자 이상자를 말한다.
 - 해당 지역 거주자란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22.4.26. 개정) 만일 해당 광역시지회 및 단위 시·군지부 이외 타지역에서 만 1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다 소속 지회 (부)를 탈퇴한 자나 본회 회원으로 만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 될 경우 회원 활동 경력을 증빙하여 거주지 광역시지회 및 단위 시·군지부 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거주 기간과 상관 없이 신입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2.11.09. 신설)
- 2. 비거주자(해당 지역 이외의 거주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 다.(2023.4.12. 개정)
- 가. 해당 지역에서 만 3년 이상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무용 전공자로 해당 재직(학)기관(관공서, 학교, 국·공립 무용 단체)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한 자이며, 학교 재직자는 무용교수 및 강사, 또는 무용교사를 말하며, 국·공립무용단체 재직자는 무용공연관련 활동자를 말한다.
- 나. 해당 지역에서 만 3년 이상 무용학원장 및 무용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 다. 해당 지역 소재 무용 전문단체에서 최근 계속해서 5년 이상 무용공연 활동(안무, 출연, 기획, 제작) 경력이 있는 자이며, 해당 단체에서 탈퇴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단, 해당 지역 무용 전문단체란 대표자 및 구성원의 50% 이상이 무용전공자이어야 한다.

- 3. 비전공자는 해당 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만 최근 계속해서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공연 활동경력이 5년 이상된 자 단, 무용공연 활동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회 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 및 무용 공연 활동(해당 지역 소재 무용 전문단체의 타지역 무용공연 포함)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4. 해당 지역 거주자로 만 5년 이상 지부에서 활동한 무용 전공자 회원은 거주지(주민등록)가 이전되더라도 동일권역 시·도내일 경우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타시·도로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5. 해당 시지회(부)에서 과거 5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주소 이전으로 당시 규정에 의거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되거나 해당 지역 전문무용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증빙될 경우 해당 시지회(부)에 바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3.1.18. 신설)
- 6.(신설) 해외지부는 해당 국가의 주(州) 또는 광역자치도(국내 개념과 유사 범위) 단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용전공자와 해당 국가의 거주 자격에 해당하며 2년 이상 무용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비전공자로 구성할 수 있다. (2023.10.26. 신설)
- ②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는 15인 이상의 무용인으로 구성하며,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무용인은 인접 지역의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의 회원은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포함하여 50% 이상이 해당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나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계가 맞닿은 인접지역 거주 무용 전공자는 해당지역 거주자 비율에 포함한다. (2022.4.26. 개정)
- ③ 본회 광역시지회 및 시·군 지부의 회원은 복수지역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단, 본회 회원은 예외로 한다. (2023.4.12. 신설)
- ④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를 운영하는 중에 회원이 감소하여 15인 미만의 회원이 될 경우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해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에 재창립 추진을 즉시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원을 보충하여 창립 절차를 밟아 재창립 인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이 경우 광역시지회·지부의 모든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은 정지되고 기존 회원이 8인 이상일 때 신입회원을 추가하여 15인 이상의 회원이 구성되면 재창립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만일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 자격에 적합한 15인 이상의 회원으로 재구성 하였다 하더라도 본 규정 제4조 ②항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존립 자격만 인정하고 그 외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 재창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재창립을 추진할 때는 재창립 추진 바로 전 임원진을 중심으로 재창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서 재창립 총회 개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립 절차와 같이 추진하여야 하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2023.4.12. 개정)
- ⑤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본 규정 제25조 ⑦항 해산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 하여야 한다.
- 1. 본회에서 재창립 총회 개최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창립 총회를 개최 하지 않은 경우
- 2. 지부 설립 이후 15인 미만의 회원 구성 상태가 3회 이상인 경우
- 3. 지부의 기존회원이 8인 미만 상태인 경우
- 4. 지부의 기존회원이 8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본 규정 제 11조 ①항 및 제13조 ②항을 충족하지 아니 한 경우
- ⑥ 해당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에서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는 변경된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⑦ 지회는 도·광역시에 설립되는 단위로서, 도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군지부가 인준되어 있어야 구성 할 수 있으며, 시·군지부가 회원 단체가 된다. 시·군지부는 도지회가 설립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도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탈퇴할 때는 시·군지부의 인준을 취소한다.

시·군지부가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도지회에서 탈퇴하여 도지회 구성 및 임원 요건이 결핍되면 도지회 임원의 자격은 보류되고 도지회 존립만 유지되며 권리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회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도지회는 본 규정 제25조 ⑥항의 절차대로 재창립 추진 절차를 밟아야한다. (2023.4.12. 개정)

제5조(신입회원 가입신청) ① 본 규정 제4조 ①항, ②항, ③항에 근거한 자격을 가진 자가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지회나 시·군지부 신입회원 가입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여야 한다.
- ③ 본 규정 제4조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입회원 가입 자격 심의 없이 필요한 서류 제출만으로 해당 광역시지회 또는 시·군지부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해당 광역시지회나 시·군지부의 신입회원 가입 자격 심의에서 탈락된 자는 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해당 광역시지회나 시·군지부에서 신입회원 가입신청을 불허할 경우 본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⑥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의 신입회원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자격이 유효하다.
- ⑦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의 신입회원 가입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2. 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생년월일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 3. 회원 이력서 1부(사진 포함)
 - 4. 회원 최종학교 졸업, 재학(적), 수료증명서 중 1부
 - 5. 비거주자와 비전공자 회원 무용공연 경력 증빙자료
 - 6. 비거주자 회원 재직 또는 재학(적)증명서 1부
 - 7. 회원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1부
 -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설립 신청 절차) ① 본회 지회·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사전에 본회에 설립 회원 자격 승인을 요청한 뒤 승인 통보와 함께 본회로부터 창립총회 개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창립총회 7일 전까지 도지회는 본회에, 지부는 해당 도지회 및 본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2023.4.12. 개정)

- ② 창립 및 재창립 총회는 본회 이사장, 사무총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이 있을 때 유효하다.
- ③ 창립총회는 매년 5월 또는 11월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단, 재창립 총회와 사고 및 해산 지회·지부가 창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2.8.17. 개정)(2023.4.12. 개정)
- ④ 창립 또는 재창립 총회 후 제7조의 지회·지부 설립 인준신청서를 제출한다. (2022.11.09, 개정)

제7조(인준신청서류) ① 본회 지회 및 지부 설립 인준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창립 시에도 이에 따른다.

- 1. 지회·지부 설립 인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별지 제1, 2호) 1부
- 2. 지회·지부 창립총회 자료(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 3. 창립총회 참석 회원(대의원) 서명부(별지 제5호, 별지 제9호) 1부
- 4. 창립총회 회의록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1부
- 5. 임원과 회원(대의원) 명단(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별지 제6호) 1부
- 6. 임원과 회원 이력서 각 1부(사진 포함)
- 7. 임원과 회원 최종학교 졸업·재학(적)·수료증명서 중 1부
- 8.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비거주자 회원재직 또는 재학(적) 증명서 1부
- 9.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비거주자와 비전공자 회원 무용공연 경력 증빙자료
- 10. 임원과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생년월일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 총회 개최 3개월 이내 발급건)
- 11. 임원 취임 승낙서(별지 제7호) 1부
- 12. 소재지 주소(약도 명기)
- 13. 지회·지부 인장(고무인, 직인, 지회(부)장인, 계인)
- 14. 창립총회 기록 영상물 1부
- 15. 도지회 임원과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10호)
- 16.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

단, 도지회 (재)창립 시,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소속지부에서 회원 확인 증빙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력서 1부, 무용 전공 증빙(최종학교 졸업·재학(적)·수료증명서 중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임원개선으로 인한 인준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회·지부 총회 자료(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 2. 지회·지부 총회 참석 회원(대의원) 서명부 (별지 제5호, 별지 제9호) 1부
 - 3. 지회·지부 총회 회의록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1부
 - 4. 임원과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대의원) 명단(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별지 제6호) 1부
 - 5. 임원과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생년월일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 총회 개최 3개월 이내 발급건)

단, 도지회 임원개선 시,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소속지부에서 회원 확인 증빙이 완료되었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6.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해당 비거주자 재직 또는 무용 전문단체 소속증명서 1부
- 7.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해당 비전공자 무용공연 경력 자료
- 8. 임원 취임승낙서(별지 제7호) 1부
- 9. 총회 기록 영상물 1부
- 10.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임원 사진 첨부 등)
- ③ 총회에서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회ㆍ지부 총회 자료 1부
 - 2. 지회·지부 총회 참석 회원(대의원) 서명부 (별지 제5호, 별지 제9호) 1부
 - 3. 지회·지부 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1부
 - 4. 보선 임원 명단(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별지 제6호) 1부
 - 5. 보선 임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생년월일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 총회 개최 3개월 이내 발급건)
 - 6. 보선 임원 취임 승낙서(별지 제7호) 1부
 - 7. 총회 기록 영상물 1부
 - 8.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임원 사진 첨부 등)

- ④ 이사회에 의해서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회・지부 이사회 자료 1부
 - 2. 지회·지부 이사회 참석 서명부 1부
 - 3. 지회·지부 이사회 회의록 1부
 - 4. 보선 임원 명단(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별지 제6호) 1부
 - 5. 보선 임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생년월일 및 1년 이상 거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 이사회 개최 3개월 이내 발급건)
 - 6. 보선 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재직 또는 무용 전문단체 소속증명서 1부
 - 7. 보선 임원이 비전공자일 경우 무용공연 경력 자료
 - 8. 보선 임원 취임 승낙서(별지 제7호) 1부
 - 9. 이사회 음성녹음 기록물 1부
 - 10.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임원 사진 첨부 등)

제8조(인준서 발급) ① 전조의 구비서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설립을 인준하고 인준서를 발급한다.

단, 인준서를 발급한 후에 인준서류를 허위 또는 위조로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임원개선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2023.4.12. 개정)

- ② 창립 및 재창립 총회 또는 임원개선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본회 이사회에서 불충분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인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창립 및 재창립 총회 또는 임원개선 총회 개최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인준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은 정지되고 지회·지부 재창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서 재창립 총회 개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립 절차와 같이 추진하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4.12. 개정)
- ③ 지회·지부 총회 및 임원개선과 관련된 인준을 정기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기간일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처리하되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인준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3.4.12. 개정)
- ④ 총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도지회 대의원은 다시 개최되는 총회 당시 각 지부에서 새로 추천하여야 하며,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원도 다시 개최되는 총회 당시 회원자격이 있는 회원으로 총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지회장 및 지부장의 공석으로 보선을 시행하여 인준을 신청할 경우 ①항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재 창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 본 규정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지회장 및 지부장 이외 임 원의 공석으로 보선하여 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선으로 선출된 해당 임원만 재선임 절차를 거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인준 및 승인 절차 진행 중에 본 규정 제8조 ⑤항에 해당될 경우 그대로 준용한다.
- ⑥ 임원개선 지회·지부의 인준이 지연되어 인준서가 발급될 경우 임기는 지회·지부 임기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해당 지회·지부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⑦ 인준을 신청하여 미인준 중에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준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지휘 감독) 지회·지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본회 이사장이 지회·지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요청) 본회 지회·지부가 설립 및 인준되면 해당 지역 도지사, 시장·군수, 예총 및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지회·지부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제 3 장 운 영

제11조(임원)

- ① 지회ㆍ지부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지회(지부)장 : 1인
- 2. 부지회(부지부)장 : 3인 이내
- 3. 이사
- 1)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 3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단, 지회(부)장, 부지회(부)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 2) 도지회: 10개 지부 이하로 구성된 도지회는 3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되 지회장, 부지회장은 포함하지 않으며, 11개지부 이상으로 구성된 도지회는 지부 인준 수효의 2배수 이내로 하되 지회장, 부지회장을 포함한다.
 - 단, 지부장은 소속 지회의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4. 감사 2인 이상 3인 이내
- 5. 고문 약간 명
 - 단,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 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6.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여 전체 회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50% 이상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도지회의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여 전체 구성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선출할 수 없다.
- ② 시·군지부의 기존 임원이 해당 지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가 이전될 경우라도 회원자격이 유지되면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회·지부의 정해진 기간에 따른다. (2023.1.18.73)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임원과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지회·지부에서 이사회를 거쳐 임기 만료 최소 14일 전까지 본회에 임원개선 총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를 임원개선 총회 시까지 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지부의 자격도 유효한 것으로 하나 본회로부터 임원개선 총회 연기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개선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3.4.12. 개정)
- ⑥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개선 총회 연기를 승인받았는데도 임원개선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 규정 제25조 ⑥항과 동일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2023.4.12. 신설)
- ⑦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지회(지부)장, 부지회(부지부)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회장과 지부장은 회원가입 후 해당 지역에서 만 2년 이상 거주 및 활동한 무용 전공자 회원이어야 하고, 그 외 임원(감사 포함)은 회원가입 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만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 단,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설립 시 임원 자격은 설립 이전의 거주 기간 및 활동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광역시지회 및 시·군지부 재창립 시에는 본 규정 제②항을 그대로 적용하나 지회(부)장 후보 등록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설립 시 임원 자격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2022.8.17. 개정)
- ③광역시·도지회 및 단위 시·군지부가 사고지회(부)로 지정되거나 재창립 지회(부)로 지정된 후 지회 (부) 자격이 충족되어 재창립 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광역시·도지회 및 단위 시·군지부 사태의 원인을 유발한 해당 광역시·도지회장은 재창립시 해당 광역시·도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단위 시·군지부장도 재창립시 해당 시·군지부장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지회(부)장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2.11.09.신설) ④도지회 부지회장은 도지회장 소속이 아닌 시·군 지부장 중에서 선출한다.
- 단, 2개의 시·군 지부로 구성된 도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3.1.18. 개정)
- ⑤ 시·군 지부장의 임기가 도지회의 부지회장 임기 중 종료될 경우 부지회장의 자격도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
- ⑥ 도지회 감사는 도지회장 소속이 아닌 시·군 지부에서 선출한다.
- 단, 2개의 시·군 지부로 구성된 도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3.1.18. 개정)
- ⑦ 지회(부)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외의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선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2022.8.17. 개정)
- ⑧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이 사퇴할 경우 사퇴한 소속 단체의 당해 임기 내는 해당 지회 및 지부의 임원으로 다시 선출할 수 없다.
- 단, 공적인 업무나 해당 지회 및 지부 임원의 공석으로 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임원이 일괄 사퇴할 경우에는 재창립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
- ⑨ 고문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지회(부)장 역임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되, 광역시지회장과 시·군 지부장은 필요시 고문으로 추대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23.4.12. 개정)
- ⑩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임무) ① 지회(지부)장은 지회·지부를 대표하며 지회·지부 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지회(지부)장은 지회(지부)장을 보좌하고 지회(지부)장이 유고될 경우 제16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지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지회·지부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18. 개정)
- ⑤ 고문은 지회·지부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18. 신설)
- 제15조(사무국) ① 지회·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지부장이 임면하며 지회·지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범법을 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

제16조(직무대행) ① 지회(부)장이 유고될 때는 부지회(부)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지회(부)장이 2 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지회(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회(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바로 지회(부)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권리와 의무) ① 지회·지부는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지회·지부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 및 업무의 진행을 2년(감사개선, 임원개선)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개선이 있는 정기총회 보고 시 회원의 거주지 증명 등 신상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탈퇴하거나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신입회원이 가입한 경우에는 회원 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임원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만일 3개월이 지나 지정 통보한 기간 내에 보고가 없을 시 본회는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지회(지부)의 임원임기가 끝났음을 서면 통보한다.
-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국가적인 재난의 경우에는 임원개선 총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⑤ 본회의 정기총회에 지회는 3명, 지부는 2명의 대의원을 파견하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지역대의원의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지역회원 중에서 본회 임원으로 선출함 수 있다.
- 단, 서울특별시지회는 지역대의원을 파견하지 않는다.
- ⑥ 지역 대의원 명단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8. 신설)
- ⑦ 지회 및 지부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회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⑧ 신입회원은 임원개선 총회 전전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재창립 총회의 경우에는 만 1년 이전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단, 임원개선 이외의 총회는 신입회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창립 총회 시에는 ⑦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⑨ 지회·지부의 인준이 실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회·지부의 기본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대의원(회원)의 선거권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단, 임원이나 회원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권리는 제한할 수도 있다. (2024.1.18, 신설)
- ⑩ 창립되는 지회·지부와 임원개선으로 재인준 받는 지회·지부는 본회에 다음과 같이 협회 발전 찬조금을 낸다.
 - 1. 창립되는 지회, 지부 100만원
 - 2. 임원개선 또는 재창립으로 재 인준받는 지회 50만원
 - 3. 임원개선 또는 재창립으로 재 인준받는 지부 30만원
- ① 기타 지회·지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① 지회·지부는 정기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현황 및 신년 계획안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년 동안 보고가 없을 때는 본회 이사회에서 사고 지회 및 지부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총회 보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지회·지부 총회 자료(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 2. 지회·지부 총회 참석 회원 서명부 1부
- 3. 지회·지부 총회 회의록 1부

- 4. 임원과 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생년월일만 표시) 1부
- 5. 감사 변경 시 해당 서류(취임승낙서,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생년월일만 표시), 졸업증명 서) (2023.4.12. 개정)
- 6. 총회 증빙 사진 3장
- 7. 임원과 회원 최신 명단(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별지 제6호) 1부
- 8.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

제19조(운영규정, 내규 등 변경) ① 지회·지부의 회칙(운영규정)과 내규가 본회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및 내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지회ㆍ지부의 운영규정 및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총회) ① 지회·지부의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지회는 대의원, 지부는 회원으로 구성한 다.

단, 지회·지부 회원(대의원)자격이 정지된 회원(대의원)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총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3.1.18. 개정)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실시하되 임원개선 총회는 임원 임기만료 1주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부)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023.4.12. 개정)
- 1.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이사 또는 회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4. 기타 세부 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2023.1.18. 개정)
- ③지회(부)장은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각 회원(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1.18, 신설)
- ④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한 회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023.1.18. 신설)
-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출석 부지회(부)장 중 연장자, 부지회(부)장 부재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총회의 임시의장을 맡는다. (2023.1.18. 개정)
- ⑥도지회의 총회는 시·군 지부장이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추천하는 지부별 대의원 각 5명씩으로 구성하되 2개 지부로 구성된 도지회는 지부별 대의원을 8명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추천할 때 현 도지회 임원(감사 포함)은 시·군지부의 대의원으로 당연히 추천하여 야 하며,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의 경우 도지회장 출마 등록자도 당연히 시·군 지부 대의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023.4.12. 개정)

시·군 지부 대의원 추천 순위는 도지회 임원(감사 포함)을 우선 추천하고, 다음은 시·군지부 임원(감사 포함)으로 추천하되 도지회 및 시·군 지부 임원이 타당한 사유가 있어 추천할 수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2023.1.18, 개정)

- ⑦도지회의 임원개선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총회를 연기할 경우 시·군지부 대의원 추천권은 연기한 총회를 다시 개최할 당시 시·군 지부장이 가진다. (2023.1.18. 개정)
- ⑧ 도지회 임원개선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임원개선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023.1.18. 신설)

제2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지부장은 다음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때지회(부)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23.1.18. 개정)

- 1. 지회,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4. 기타 세부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2023.1.18. 개정)
- ②지회(부)장은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한다. (2023.1.18. 신설)
- ③이사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023.1.18. 신설)
- ④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출석 부지회(부)장 중 연장자,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이사회의 임시의장을 맡는다. (2023.1.18. 신설)
- ⑤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4.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6.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7. 고문과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8. 기타 지회ㆍ지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대의원) 및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대의원)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3조(수입 등) ①지회·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2023.1.18. 개정)

- 1. 가입비 및 회비
- 2. 각종 찬조금 및 지원금
- 3. 사업 수익금
- 4. 기타 수입

②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감사) ① 지회·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

② 지회·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지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25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 이사장은 각 지회·지부가 무용발전에 크게 공헌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1. 지회·지부 및 향토예술문화의 발전에 공적이 있을 때
- 2. 지역 무용예술인들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였을 때
- 3. 사업수행에 따른 공로가 있을 때
- ② 본회 이사장은 각 지회·지부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사고 지회·지부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본회의 정관 및 지회·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등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본회 이사회의 결의 및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 3. 지회·지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4. 사고로 인하여 지회(부)장)이 궐위할 때
 - 5.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 또는 임원의 일괄사퇴 및 일괄사퇴에 준하는 상황에 의해 정상적인 임 무 수행이 어려울 때
 - 6. 회계부정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 7. 기타 본회에 대해 뚜렷한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때
- ③ 전항의 경우 이사장이 선임한 2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②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자격 정지
 - 3. 사고 지회 및 지부 지정
 - 4. 지회 및 지부 해산
- ⑤ 지회 및 지부가 전항의 사고 지회 및 지부로 지정되거나 해산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해당 지회 및 지부의 자격과 임원 및 회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되며, 본회 이사장은 수습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회·지부가 사고 지회·지부로 지정 통보되면 본회에 재창립 추진을 즉시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항의 수습 절차를 거쳐 재창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재창립 추진 바로 전 임원진 중 회원자격이 있는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본회에서 재창립 총회 개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창립 추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일 1개월 이내에 재창립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본조 ⑦항 해산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023,4.12, 개정)
- ⑦해산될 경우 해산 결정된 날부터 만 2년이 지나야 재창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재창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본회에서 재창립 총회 개최 승인을 받으면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립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⑧지회(부)장이 다음의 사유를 유발한 때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②항과 관련한 행위를 하였을 때
- 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 3.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은 때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은 때
- 4.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
- ⑨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자격 정지
 - 3. 직위 해제

제26조(자체 포상 및 징계와 복권) ① 지회(부) 회원이 무용발전에 크게 공헌할 경우 지회(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지회(부) 회원 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으나 제명의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회(부) 운영규정 및 제반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지회(부)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 4. 회계부정 및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 5. 본회 이외의 기관에 본회 또는 지회·지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
 - 6. 기타 지회 · 지부에 대해 뚜렷한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때
- ③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자격정지
 - 3. 제명

단, 지회는 지부를 징계할 수 없고 본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명된 지회·지부 회원에 대해 복권을 결의할 때는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회·지부 운영에 관한 이의 신청) 지회·지부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 ① (절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지회·지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이견이 있을 경우 먼저 소속 단체의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요건을 구비하여 소속 단체 자체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감사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절차를 밟아 요건을 구비하여 소속 단체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3. 소속 단체 자체 감사나 소속 단체 자체 임시총회 개최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부 관련 사항은 해당 도지회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 처리를 요청하고, 도지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본회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4. 소속 단체 자체 감사나 소속 단체 자체 임시총회 개최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도지회 및 광역시 지회 관련 사항은 본회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요경비 부담) 지회·지부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한다.
 - 1. 지회지부와 관련하여 회원(들) 개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회원 개인(들)이 소요경비 일체를 부

담한다.

- 2. 지회·지부와 관련하여 지회·지부 단체에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지회·지부 단체에서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③ (소요경비 내역)이의 신청으로 발생하는 소요경비는 실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지부 및 본회 수습위원 수당은 아래에 정하는 대로 지급한다.
 - 1. 여비 및 교통비 : 실비
 - 2. 숙식비 : 실비
 - 3. 수습위원 수당 : 1일 2시간 이내 소요 시 10만 원, 2시간 이상 소요 시 20만 원
 - 4. 기타 실소요 경비
- ④ (수습 절차) 지회·지부는 본회 수습 절차를 준용한다.

제 7 장 보칙

제28조(규정의 준용)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② (규정의 적용)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지회·지부의 정관 또는 회칙 및 제 규정의 적용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24.1.18. 개정)
- ③ (규정 적용의 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지회·지부의 임원과 회원자격에 대한 활동경력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의 시가 창원시로 통합됨으로써 창원시지부, 마산시지부, 진해시지 부를 1개 시지부로 통합하여야 하나 기존 3개 시지부가 일시에 통합하는 데 혼선이 예상되어 부득 이 한시적으로 통합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부 형태를 인정하되 지부 명칭은 창원지부, 마산 지부, 진해지부로 하며, 신입회원은 창원시 전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무용가로 3개 지부 중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 3. 시·군 지부의 임원 명칭 중 간사는 일괄적으로 이사로 변경한다.
- 4. 해외지부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 시·군지부 규정을 준용하며, 제출 증빙자료는 국내와 유사한 자료로 대체한다. (2023.10.26. 신설)